

■ 정책 동향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추진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6년 1월 29일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의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 시장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및 일부 공공적 법인의 외국인 한도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한도도 폐지되어 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낮아졌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다수 국가에서 빈번하게 매매해야 하므로 거래비용 등에 민감한데 현행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에 따르면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높은 처리비용의 부담이 있고, 외국인 투자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 역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개별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처리·결제하는 등 후선업무의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즉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본인(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절한 자격을 글로벌 자산운용사·증

권사가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하고, 최종투자자(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정)의 주문·결제를 대행하게 됩니다. 즉, 계좌 명의자는 최종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을 하고(통합매매), 통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문의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 역시 통합계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통합결제).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의 계좌관리·매매·결제과정이 간편해지고(거래비용 감소), 외국인 개인 및 중소 기관투자자도 직접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의 업무도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편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2. 다운로드 :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 보도자료